KOSCA
대한전문건설협회
인천광역시회

수 신 회원사

참 조

제 목 하도급법 외 건설분쟁 관련 수·위탁분쟁조정 제도 활용 안내

---

1.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이상인 경우 등에만 적용되어, 하도급법상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구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 '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16,937개사 중 7,397개사(43.7%)가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

2. 이에 하도급법 적용 제외로 분쟁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께서는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의 수·위탁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□ **수·위탁분쟁조정제도 개요**

○ **(근거)**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따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 운영

○ **(대상)** 수·위탁거래는 위탁기업의 규모 요건이 없어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원사업자와의 분쟁도 조정 신청 가능

-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 미만이거나 수급사업자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경우의 대금 미지급·부당감액 등 분쟁

○ **(효력)** 수수료 없음,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

○ **(신청방법)** 중소기업 수·위탁거래종합포털(www.smes.go.kr/poll)
[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] 메뉴

○ **(문의전화)**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(1357, 내선 9) 또는,
협회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(02-3284-1026)

붙임 1. 수·위탁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부.
2. 수·위탁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1부. 끝.

※ 붙임 문서는 협회 홈페이지(www.incheon.kosca.or.kr) - 시·도소식-공문/공지사항 참조바랍니다.

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
회 장 조 홍 수

담당자 팀원 최현탁 선임 임윤환 파트장 유태원 파트장 노명숙 팀장 조태원
시행 전건협 인천 제820호(2026.10.28)
우 21574/인천 남동구 인하로 507번길 38 4층(구월동, 전문건설회관)/ http://incheon.kosca.or.kr
전화 032-428-7331 / 전송 032-428-7334 / 전자우편 sraris23@kosca.or.kr